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기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1.

발 의 자 : 김기웅 · 이만희 · 서명옥
안철수 · 김석기 · 최은석
임종득 · 김소희 · 권영진
강명구 · 이종배 · 박성훈
김기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등을 확정 한 후,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넘어 국회 전체 차원에서 국가 거시 정책 및 예산과의 유기적 연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보고 대상을 국회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).

법률 제 호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의2(국회에 대한 보고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8조의2(국회에 대한 보고) 보</u> <u>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건의료</u> <u>발전계획의 주요 내용, 제16조</u> <u>에 따른 해당 연도 주요 시책</u> <u>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</u> <u>적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</u> <u>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</u> <u>여야 한다.</u>	<u>제18조의2(국회에 대한 보고) ①</u> <u>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</u> <u>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</u> <u>였을 경우 국회에 보고하여야</u> <u>한다.</u> <u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</u> <u>따른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</u> <u>추진방안을 수립한 경우 국회</u> <u>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</u> <u>한다.</u>